

2023년도 한국선급 정기종합감사 결과

I 감사 개요

1 감사배경 및 목적

- 선박·선박용 물건,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및 평형수 관리시스템 적합성 검정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정부대행업무의 효율성 제고
- 조직, 인사, 회계 및 예산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검사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내실화 기여

2 감사대상 및 범위

- (사)한국선급 / 2021. 9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(본부·지부)

3 감사기간 및 인원

- 2023. 10. 16. ~ 10. 27. (10일간), 감사담당관 외 4명
* 해사안전국 주관, 정부검사업무 지도감독 병행(23. 10. 16. ~ 10. 20.(5일))

4 감사 중점사항

- 선박검사 등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사항
 - 대행업무 절차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, 수수료 산정 적정성, 심사보고서 작성 실태, PSC 출항정지 저감대책 이행 실태 등
-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
 - 연구용역, 수의계약(분할계약 여부) 등 관련 예산 집행, 연구개발 과제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적정성 등
- 조직관리, 인사 및 성과급 지급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

II 감사 결과

1.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수당 지급 및 평가 부적정

- 선급 「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수당 지급 기준」에 따르면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각 과제별 참여도 및 성과기여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
 - 그런데 선급은 5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 평가 시 연구수당 지급상한(연봉 18~24%)으로 해당 연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,
 - 지급상한 대상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후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, 지급상한 대상자의 연구수당을 타 직원에게 임의 배분하는 등 연구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
 - 또한 동 기준에 따르면 연구수행 기여도 평가기준은 3개 지표(참여도 30%, 성과기여도 60%, 성실성 10%)로 구성하고, 성과기여도는 평가항목을 합산하되 각 항목의 가중치의 합은 1로 규정함
 - 그런데 다각화사업팀이 수행한 12개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수행 기여도 평가서를 확인한 결과, 대부분의 평가항목 가중치 합산이 1이 안되거나 초과하는 등 평가를 부적절하게 실시함
- (행정상) 부적정 지급 연구수당(6,321천원)을 전문기관에 반납 요구(시정 1)
- (행정상) 재평가를 통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 확인·반납 요구(통보 1)
- (행정상)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세부 기준 등 마련 요구(통보 1)

2. 연간 인력 수급계획 미흡 및 중국지부 채용정보 미공유

가. 연간 인력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- 「인사 및 자격관리 절차서」에 따라 인사팀에서는 매년 인력수급* 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있음

* 정규/계약직('20년 5명/20명, '21년 28명/6명, '22년 30명/21명, '23년 56명/27명)

- 그런데, 직원 915명중 계약직(검사원 포함)이 227명으로 약 25%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

나. 중국지역본부 검사원직 채용에 관한 사항

- 「직원채용 규칙」에 따르면 해외 현지인은 회장의 승인을 통해 채용하나, 중국(현지법인)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함
- 이로 인해, 정부대행 검사·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임에도 본부에서는 현지에서의 채용규모 및 적정 인원이 채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
- ➔ **(행정상)** 효율적인 인력운동을 위해 연간 인력 수급계획 수립 시 계약직에 대한 사항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(권고 1)
- ➔ **(행정상)** 중국지역본부에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선급 본부와 사전 협의 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 1)

3. 아카데미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부재

- 선급은 「정관」에 따라 각종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정관에 명시된 사항은 사내 규정 등을 제정·운영하도록 되어 있음
 - 그런데 선급은 정관에 명시된 업무이자, 연간 96회의 교육과정(185일)에 1,600여명의 교육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아카데미센터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음
- 또한 선급은 외부 교육훈련(법정/비법정) 사업을 위해 사업본부의 하부 부서조직으로 아카데미센터를 두고 있으며, 센터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해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지침서를 마련·운영 중임
 - 그런데 업무지침서에는 교육의 종류, 계획수립, 교육비 등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 및 절차*가 없는 실정임
 - * 교육종류, 과정 개발·운영체계, 계획수립, 교수요원 운영, 평가체계, 교육비 정산 등
- ➔ **(행정상)** 업무 비중 및 역할을 고려하여 아카데미센터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, 업무지침서를 보완하도록 요구(통보 1)

4. 연구노트 작성 및 연구시설장비 등록·관리 소홀

-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노트를 작성하고,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자산으로 등재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·장비종합정보시스템(ZEUS)에 등록하여함
- 그런데 연구노트 작성 시 확인자·기록자 서명 등을 누락(13건)하고, 연구장비를 전산시스템(ZEUS)에 지연등록(4건)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

➔ **(행정상)** 연구노트, 연구장비 관리 소홀에 대해 주의 조치(**기관주의 1**)

5. 외부강의 신고 부적정

- 선급 직원은 「선급 임직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시, 종료 후 10일 이내 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음
- 그런데, '21.9월~'23.9월까지 1,140건(사례금 372백만원)의 외부강의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, 41건이 지연 신고됨

➔ **(행정상)** 전 직원 교육, 행정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(**통보 1**)

➔ **(신분상)** 외부강의 지연 신고(2회 이상) 관련자에게 '주의' 처분 요구(**5명**)

6. 중대재해 예방·대응 기준 일부 미비

- 「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」 시행('22. 1. 27.)으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부여됨에 따라 선급은 안전·보건 관련 절차서에 이를 반영하여 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함
- 그런데 선급은 안전·보건 관련 절차서에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(반기 1회)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절차 등의 반영이 미흡함

➔ **(행정상)** 법정 의무사항을 관련 절차서에 반영토록 요구(**개선 1**)

7.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 노력 부족

가.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 종합대책 수립 관련

- 「항만국통제(PSC) 업무처리 절차서」 7.4.에 따르면 검사본부장은 전년도에 발생한 PSC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당해 년도 PSC 출항정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

※ 최근 유럽 및 미국에서 국적선박의 출항정지가 증가하여 국가 등급이 떨어짐
(유럽 : Grey List('21.7.~), 미국 Qualship 21 지위에서 제외('24.7.) 예정)

- 그런데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, 출항 정지된 선박에 대한 일부 자료를 간략하게 통계·평가하고 있을 뿐, 충분한 자료를 분석* 하지 않고 있어,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

* 외국 항만당국별 지적사항, 선급 지부별(해외포함) 검사·심사한 선박의 결함율, 선사·선박별 결함사항·비율 등을 토대로 출항정지 원인과 잠재위험요인 식별 필요

나. 외국 항만국통제(PSC)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

- 「항만국통제 업무처리 절차서」에 따르면 국적선박이 출항 정지될 경우, 해당 지부에서 '원인조사보고서'를 작성하고, 검사업무팀은 선급(검사원) 귀책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조치*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

* '자체부적합 보고서'를 발행하여 해당 부서에서 원인을 조사·분석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검사원에 대한 교육 및 현장검사 모니터링 실시·기록

- 그런데 '21. 1.부터 '23. 10.까지 38건의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'원인조사보고서'를 검토하였으나, 일부는 선급귀책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당 지부의 의견을 근거로 별도 후속조치를 않음

* 다만, '23. 9월경 출항정지 원인을 선급귀책으로 자체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취함(1건)

➔ **(행정상) 국적선박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 분석하여 보다 내실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(통보 1)**

➔ **(행정상) 출항정지 원인과 관련하여 선급의 귀책 여부를 객관적으로 자체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 1)**

8. 인증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필요

- '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'과 「선박검사대행기관 지정 기준」에 따르면 선급은 선박의 상태가 항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주관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
 - 선급은 「협약심사기준」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, 선박 인증심사 중 식별된 중부적합사항(경부적합사항으로 경감된 경우 포함)은 선박의 기국 정부 등에 보고하고 있음
 - * 선급은 국제안전관리규약(ISM Code) 및 「해사안전법」에 따라 국적선 및 외국적선 선박과 사업장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
 - 그런데 선급은 외국적선과 달리 국적선에서 중부적합사항이 식별될 경우 우리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고 있음
 - * 「인증심사 사무처리규정」(해수부 훈령)에 따르면 중부적합사항이 인증심사 기간 내 시정되거나 경부적합사항 수준으로 경감되지 않은 경우만 보고토록 규정
 - ※ 최근 3년간 일부 국적선박(○○○○)은 중부적합사항이 2번 확인되었으며, 일부 선사(3개 선사)는 소속 선박이 여러 차례 중부적합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확인됨
- ➔ **(행정상)** 중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국적선박, 사업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선급의 관리강화 방안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요구(권고 1, 해사국)

9. 선박안전관리증서 발급 관련 업무 소홀

- 「협약심사기준」 제3장에 따라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할 경우, 해당 선박이 지방청에 등록된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소속 선박인지 확인(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)한 후 증서를 발급하여야 함
 - 그런데 ○○○ 지부 검사원은 '22. 12. 12. 해당 선박이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등록('22. 12. 23.)되지 않았음에도 심사 후 증서를 발급함
- ➔ **(행정상)** 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안전관리사를 반드시 확인·증빙하도록 심사원 교육, 지침시달 및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(통보 1)
- ➔ **(신분상)**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선박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한 관련자에게 '경고' 처분 요구(1명)

10. 임시항해검사증서 기재사항 및 서류 등록관리 미흡

가. 임시항해검사증서 관련 선박검사증서 발급 미흡

-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에는 검사관의 성명, 검사일 및 검사장소를 기재해야 하고, 해사산업기술과의 지시에 따라 '항해와 관련한 조건'에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
- 그런데 '21.9월~'23.9월까지 임시항해검사(총 289건)를 점검한 결과,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한 사례가 총 23건 확인됨

나. 임시항해검사 관련 선박운항계획서 등록관리 소홀

-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운항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, 선급은 내부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선박운항계획서를 전산으로 보관하도록 규정('22. 1. 1. 시행)
- 그런데 '22.1월~'23.9월까지 임시항해검사 총 246건 중 선박운항계획서가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17건 확인됨

- ➔ **(행정상)** 임시항해검사증서 발급 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(통보 1)
- ➔ **(신분상)** 임시항해검사증서 발급 및 기록업무를 2회 이상 소홀한 관련자에 대해 '주의' 처분 요구(4명)